

조선총독부관보(朝鮮總督府官報) 제1841호(號) 1933(昭和 8)년 3월 1일 수요일

○ 고 시(告示)

조선총독부고시(朝鮮總督府告示) 제68호(號)

1930(昭和 5)년 조선총독부고시(朝鮮總督府告示) 제74호(號)(조선국유철도 화물운송규칙[朝鮮國有鐵道貨物運送規則]) 중(中) 1933(昭和 8)년 4월 1일부터 아래[左]와 같이 개정(改正)함.

1933(昭和 8)년 3월 1일 조선총독(朝鮮總督) 우가키 가즈시게(宇垣一成)

제8조(條)제2항(項) 중(中) 「10시간(時間)」을 「배달부(配達付)는 24시간(時間) 기타(其他)는 10시간(時間)」으로 개정(改正)함.

제12조(條)제1항(項)제18호(號)를 아래[左]와 같이 개정(改正)함.

18 외국화물(外國貨物)에 있어서는 운송면장(運送免狀)의 종류(種類) 및 번호(番號) 기사란(記事欄)에 기입(記入)할 것.

제29조(條)제1항(項) 중(中) 「도착통지[到着通知]를 요(要)하지 아니하는 취지[趣旨]의 특약[特約]이 있을 때는 화물[貨物]이 착역[著驛]에 도착[到着]한 때[時]」 및 제40조(條)제1항(項) 중(中) 「(제20조[條]제1항[項]에 의[依]하여 도착통지[到着通知]를 요(要)하지 아니하는 취지[趣旨]를 특약[特約]한 것에 있어서는 착역[著驛]에 도착[到着]한 때[時])」를 모두 「(제20조[條]제1항[項]제8호[號]에 의[依]하여 특약[特約]한 것에 있어서는 착역[著驛]에 도착[到着]하여 인도준비[引渡準備]가 완료된[整] 때)」로 개정(改正)함.

제35조(條)제2항(項) 중(中) 「요금액(料金額)」을 「요금(料金)」으로 개정(改正)함.

제42조(條)제1항(項) 중(中) 「제20조(條)제1항(項)에 의(依)하여 도착통지(到着通知)를 요(要)하지 아니하는 취지[趣旨]를 특약(特約)」을 「제20조(條)제1항(項)제8호(號)에 의(依)하여 특약(特約)」으로, 「20일(日)」을 「15일(日)」로 개정(改正)함.

제60조(條)제2항(項) 중(中) 「도착통지(到着通知)를 요(要)하지 아니하는 취지[趣旨]의 특약(特約)」을 「제20조(條)제1항(項)제8호(號)의 특약(特約)」으로 개정(改正)함.

제72조(條)제1항(項)제1호(號) 중(中) 라의 다음에 마를 아래[左]와 같이 추가(追加)함.

마 수조차(水槽車)를 사용(使用)한 때는 그 표기하중톤수(表記荷重噸數).